

학생회 규정

제정 2021.01.01.

제1조(학생회)

①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각 부서별로 부장(3학년) 및 차장(2학년)을 둔다.

③ 각 부서는 총무부, 학예부, 봉사부, 보건체육부, 바른생활부, 도서부, 환경미화부, 특별활동부, 홍보부 등 9개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1. 총무부는 회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추진, 기록과 저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학예부는 학예활동 및 학력과 기술연마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봉사부는 봉사활동 및 봉사정신 함양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보건체육부는 체력향상 및 각종 체육활동에 관한 일을 한다.

5. 바른생활부는 학생생활태도의 확립과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도서부는 학급 및 학교 도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환경미화부는 청소 및 쓰레기 분리 수거 등 교내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특별활동부는 동아리 활동 및 학교축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9. 홍보부는 학생회 활동의 각종 홍보 및 학교신문 제작, 학교 홈페이지 학생회 관련부분을 담당한다.

④ 선출 및 임명

1. 후보자 자격 : 회장은 3학년, 부회장은 3학년과 2학년에서 품행이 단정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는 학생으로 미인정결석 이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는 제한한다.

2. 선거 방식

1) 회장과 부회장을 런닝메이트로 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임명.

2)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를 각각 실시하여 최다득표자가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임명

3) 회장 선거와 3학년 부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 차순위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임명하고, 2학년 부회장 선거는 별도로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임명

- 4) 34조 4항 2호와 1목과 2목, 3목 중 하나를 택일함.
- 5)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
- 6) 단일 후보가 부결되었거나 후보 등록자가 없을 때는 협의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투표 없이 임명한다.
3. 서기, 부서의 부장(3학년), 차장(2학년 혹은 3학년)은 회장이 지명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4.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는 학생회에서 2주 내에 지명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조(대의위원회)

- ① 대의위원회는 학생회의 심의·의결 기관으로 기능한다.
- ② 구성
 1. 대의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각 전문 부서의 부장, 차장 및 각 학급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각 학급 대의원이라 함은 학급 반장, 부반장 및 대의원 2명을 칭한다.
 2.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 대의원회의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3. 의장은 대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회의를 주재한다.
- ③ 기능
 1.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3. 학생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급회의시 제출된 건의사항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회의
 1. 정기 대의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나 대의원의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혹은 협의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의원 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위원회)

- ① 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바람직한 학생자치기구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

해 협의위원회를 둔다.

② 협의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로 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협의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위원의 $\frac{2}{3}$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한다.

④ 협의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협의위원의 $\frac{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제4조(학급회)

① 학급의 질서 유지와 효율적인 학급운영을 위하여 각 반에 정·부반장, 대의원의 선출 및 임명에 적용한다.

② 책임감이 강하고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는 학생으로, 미인정결석 이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는 제한한다.

③ 학급회의에서 본교 선거관리규정을 기본으로 직접 선출하여 담임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급 간부학생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담임을 보좌하고 담임의 지도에 따라 학급 사무처리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전교 대의원회의의 학급 대의원이 된다.

2.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 반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또한 전교 대의원회의의 학급 대의원이 된다.

3. 대의원은 학급회의를 주관하고 전교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학급 대의원으로 서 정·부 반장과 함께 학급의사를 대변한다.

⑤ 학급 간부학생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는 학급에서 2주 이내에 보선하여 재임명의 절차를 밟는다.

⑥ 학급회 각부서는 학생회 각부서와 동일한 부서로 조직하며, 학급 전원을 각부서의 부원으로 편성한다.

1. 바른생활부장은 학급 문화 및 생활 태도 개선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도서부장은 학급 도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봉사부장은 봉사활동 및 봉사정신 함양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총무부장은 학급 예산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보건체육부장은 체력향상 및 각종 체육활동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환경미화부장은 청소 및 쓰레기 분리 수거 등 학급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학예부장은 학예활동 및 학력, 기술연마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8. 서기는 학급회의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추진, 기록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9. 위의 학급회 부서는 학생회 각 부서와 함께 제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선거관리규정)

- ① 본 규정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터득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또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적어도 선거일 1주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1. 선관위는 당해년도 최고학년의 각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직접선출 또는 학교장이 위촉한다.
 2.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선거공고, 선거벽보관리, 투표지 작성과 배분, 선거운동 감시, 투표소 설치, 개표, 집계, 당선자 공고 등)을 주관하되, 선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끌어 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감독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선관위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④ 학생회 정·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담임 또는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 ⑤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원을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⑥ 선거방식은 제5장 34조 4항과 같다.
- ⑦ 선거인 명부는 학급 명렬표로 대체하며 투표당일 결석자 명부를 선관위가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 ⑧ 선거인은 본교 재학생으로 선거일 전날까지의 재적원으로 한다.
- ⑨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투표당일 한 시간 전까지 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각각 선거 운동원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선관위원은 제외한다.
 3. 선거운동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금품수수나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무효로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행해져야하고 벽보나 피켓을 사용 할 수 있다.
 5. 선거용 벽보는 후보자 인적사항, 경력,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 할 수 있으며 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실을 수 없다.
 6. 벽보는 후보자별 5매 이내로 하며, 배열순서는 기호 순으로 하고 동일 장소에 부착

한다.

7. 선관위는 투표일 하루 전까지 안전생활부의 도움을 받아 투표 소를 정하고 투표소에 선관위원장석, 참관인석,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등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⑪ 투·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투표는 선거당일 출석한 전교생이 무기명 직접·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2. 후보별로 투표와 개표시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감표위원을 1인씩 둘 수 있다.
3. 개표는 투표 장소에서 선관위원이 담당하고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관위원이 행한다.

⑫ 다음 각 호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선관위에서 제작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표.
3. 어느 난에도 기표가 되어 있지 않은 표.
4. 2인 이상의 난에 기표한 표.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표.
6. ○ 표를 하지 않거나 문자 또는 기타 다른 기호로 기표한 표.
7. 위 경우 외의 무효표는 선관위의 판정에 따른다.

⑬ 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협의위원회의 재가를 얻어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및 후보자 등록원을 허위로 작성한 학생.
2. 선관위원, 상대 후보자 및 유권자에게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행한 학생.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였거나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학생.

⑭ 당선자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즉시 학교장에게 결과를 알리고 당선자를 학교 게시판에 알려야 한다(이때 총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표, 기권표 등을 함께 공표한다.).
2. 제5장 38조 13항에 의해 당선자가 무효가 되었을 때 차점자를 당선자로 공고한다.